

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-31호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
2024년 4월 2일

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

1.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: 제2024-5호(2024.4.2.)
2. 점·사용의 목적 :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관로 및 수질오염 방지막 설치
3. 점·사용의 장소 :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52번지선
4. 점·사용의 면적 및 기간
 - 면적: 300.83m²(방류관로 30.83m² / 수질오염방지막 270m²)
 - 기간: (방류관로) 2024.4.2. ~ 2039.4.1. (15년)
(수질오염방지막) 2024.4.2. ~ 2024.12.31. (274일)
5. 점·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성명 : 여수시장(하수도과장)
 - 주소 :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. 끝.